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저축은행

2. 조치일 : 2025. 10. 2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리스크관리 강화

내규「유가증권투자규정」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령 등에 의거 이사회에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정한 후 투자·운용해야 하며, 유가증권 투자 시 증권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종목별, 업종별, 기간별로 분산투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이사회에서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한도를 정하고 나머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손실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25.3월말 기준으로 총 780억원의 유가증권을 투자하였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2024.5.20. ~ 2025.3.31.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상장주식인 A투자증권에 총 110억원을 집중 투자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회사는 유가증권을 투자·운용하기에 앞서 이사회에서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권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관리하는 한편, 종목별·업종별·기간별로 분산투자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 신용대출 여신심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8조 및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신용평가 결과 원칙적으로 우량등급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2021.1.21. 차주 ㈜B에 대한 신용대출 15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재무상태가 부실함에도 본 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 차주의 실 경영주 겸 관계사 대표이사인 甲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1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이후 차주가 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CCC까지 하락하는 등 신용상태가 열위함에도 2021.8.13. 및 2024.2.23.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취급하는 등 총 3건, 4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대출제한 신용등급 기준 및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등 객관적 기준을 내규에 마련함으로써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취급하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PF대출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강화

저축은행은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여신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 보다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검사대상기간(2022.7.23.~2025.4.30.) 중 총 19개의 PF 사업장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여신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 보다 악화되었는데도 여신심사위원회에만 부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회사는 향후 이사회 부의기준을 마련하고 당초 승인내용 보다 여신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4) 여신 감리기능 강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별표 3 여신감리기준 등에 따라 여신취급 또는 심사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에 의하여 여신감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동 감리업무는 여신승인 및 사후관리 과정과 관련 있는 조직 또는 직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부산)흥국저축은행은 여신감리팀의 구성원들이 여신관리팀을 겸직하고 있고 여신 취급 및 승인을 담당하는 임원의 지휘를 받고 있어 여신 취급 전·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실여신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여신 감리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감리업무가 여신승인 및 사후관리 과정과 관련 있는 조직 또는 직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 등 여신 감리업무의 독립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